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6 민사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5219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정재호, 이동명, 채은혜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희
변 론 종 결 2021. 4. 2.
판 결 선 고 2021. 4.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이 2017. 9. 8. 피고에게 한 액면금 294,3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발행일 2017. 9. 6. 지급기일 2017. 9. 1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발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C, D, E, F에게 294,300,000 원, 원고 G에게 289,958,900원, 원고 H에게 237,071,900원, 원고 I, J에게 200,000,000 원, 원고 K에게 124,218,360원, 원고 L에게 102,000,000원, 원고 M, N, O, P, Q, R에게 100,000,000원, 원고 S에게 93,100,000원, 원고 T에게 81,000,000원, 원고 U에게 80,000,000원, 원고 V, W에게 50,000,000원, 원고 X에게 40,000,000원, 원고 Y, Z에게 30,000,000원, 원고 AA에게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의 사기 범행 및 원고들과 피고의 투자

1) B은 2014. 11. 24.부터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 2016. 12. 30.부터 주식회사 AC을 각 운영하면서 투자 상품 개발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타인의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와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J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2) B은 위 법인들을 이용하여 원고들 및 피고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에게는 원고들 및 피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으로부터 속은, 원고들은 별지 2 원고들 피해 내역 및 금액 기재와 같이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별지 3 피고 피해 내역 및 금액 기재와 같이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3) B은 2018.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AB 등의 법인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B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경위

1) B이 투자금 모집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는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한 AK을 통하여 B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B은 2017. 9. 6.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AL 증서 2017년 제138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7. 9. 1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B의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9. 20. 그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2017타채9158호).

3) AM은 위 예금채권액 571,939,866원을 압류경합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금제4527호로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8. 2. 23. 그 배당절차에서 293,628,254원을 배당받아 그 무렵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28, 36, 37호증(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B의 대규모 사기 범행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B에 대한 같은 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자,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이를 변제받고 동결된 B의 AM 계좌에서 채권액만큼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7. 9. 18. B과 통모하여, 발행일을 2017. 9. 6.로 소급하여 작성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B으로부터 발행받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곧바로 위 계좌에 관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후 공탁된 위 계좌의 예금액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 상당액을 배당받았다. 이러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B의 사기 범행 피해자이자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배당받은 어음금 상당액과 원고들 각자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적은 금액을 가액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도 B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이고, B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B으로부터 위 손해배상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별지 2 목 록 중 '채권액'란 기재 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B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

의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전부터 있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는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 27903 판결 참조).

나)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등 참조)

다)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

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한편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86993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 여부에 관하여

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29, 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수원서부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AM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은 인정된다.

① 2017. 6.경부터 B의 사기 등 범행에 관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B에게 투자한 피해자들이 원금을 돌려달라는 등의 민원이 증가하였고, B은 점차 피해자들에게 당초 약정한 확정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② 수원서부경찰서는 2017. 6. 12. AM에 B의 위 은행에 대한 예금계좌에 관

하여 범죄와 관련한 예금이니 그 이용을 정지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AM은 같은 날 B의 위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였다.

③ B은 2017. 8. 23. AD 대표 AN 명의로 같은 회사 팀장들에게 '8월 정도에는 상황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원리금 지급을 중단하며, B의 운용 수익으로 정기적인 원리금 상환을 계획 중이지만 구체적인 기한을 확답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배포하였고, 일반 고객들(즉 피해자들)에게도 '회사 차원에서 원리금 지급을 동결하고, 다만 새로 위탁받은 자금의 운용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체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배포하였다.

④ 피고는 AO, AP, AQ 등과 함께 AD의 수석팀장인 AK을 통하여 AD에서 판매하던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였다. 피고 등 위 네 사람은 2017. 8.경 원리금 회수를 위해 AK을 통해 B을 만나서, 원리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B은 협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AK은 위 네 사람과 AR에게 원금의 일부를 회복하여 주기 위하여 2억 9,430만 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 사실과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으로 책임재산이 감소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책임재산을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재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B이 피고와 B의 채권자들을 사해할 의사로 통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을 B의 책임재산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① B은 이미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그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다. 또한 달리 그 행위로 인해 B의 책임재산을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설령 B의 책임재산을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앞서 본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과 같은 맥락으로, 약속어음의 발행 및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것 자체만으로는 적극재산의 감소 또는 소극재산의 증가 즉, 책임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약속어음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채무자의 재

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책임재산의 처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일 뿐, 곧바로 사해행위라고 선언하는 취지가 아니다. 다시 말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이 책임재산의 처분과 동일하다고 평가된다면, 비로소 책임재산이 처분되었으니 사해행위의 가능성이 생긴 것이고, 그것이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책임재산의 처분을 통해 채무가 변제된 것이므로 그 채무의 변제가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법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곧바로 현금을 주어 변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위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추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발행을 통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위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곧바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설령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 책임재산의 처분과 동일하게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B이 특히 일부의 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2) B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하였는지

① 피고는 B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B에 대하여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4억 4,100만 원(피고 명의로 투자한 3억 9,500만 원 및 피고의 딸 AS 명의로 투자한 4,600만 원의 합계)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통해 지급받은 돈을 나누기로 한 AO는 2억 원을, AP은 9,000만 원을, AQ는 1억 5,000만 원을 각 투자하

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따른 어음금 중 293,628,254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위 사람들의 피해액 8억 8,100만 원의 약 33% 정도에 불과하다.

②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이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는데, 이는 결국 집행권원을 취득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는 여전히 일반채권자에 불과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은 아니다. 피고는 AM이 공탁한 예금채권액에 관하여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았는데, 이때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도 누구나 집행권원만 있다면 일반채권자로서 피고와 함께 배당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AM은 위 예금채권의 압류경합 문제로 이를 공탁하였는데, 이는 B의 다른 채권자도 위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피고와 함께 배당을 받았다는 것이다.

③ 배당절차에서는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들이 자신의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집행권원을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가압류를 한 뒤 이후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다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즉, 배당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배당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는 행위는, 채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지급받는 것과는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만약 피고가 B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다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등의 방식을 취했더라도 같은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경우와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통해 취득한 경우를 달리 취급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 등은 AK과 친분이 있었을 뿐 B과는 친분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B도 이 법원에서 '2017. 8.경 수많은 투자자들이 원리금을 돌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하

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투자자가 와서 도장을 찍어 달라 했어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비추어 보면, B은 원리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을 면할 생각이었을 뿐 특별히 피고 등에게 우선하여 변제하고자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이 피고 등과 통모하여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피고 등에게 변제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⑥ 한편 원고들은 B의 위 사기범행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은 B의 AM 계좌에 관하여 지급정지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위 계좌에서 돈을 받아간 행위는 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의 위 사기범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와는 다르고, 실제 B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위 법 위반으로 의율된 것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의율되었을 뿐이다. 또한 수원서부경찰서가 AM에 보낸 공문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근거로 한다는 내용이 없고, AM이 단지 범죄 수사에 관한 협조 차원에서 계좌의 지급만을 정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AM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것이 아닌 이상, 압류 및 추심권자의 추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사해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명산

판사 심현근

판사 정신영

별지 1

원고 목록

1. C
2. D
3. E
4. F
5. G
6. H
7. I¹⁾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1) 소장의 당사자 표시 부분에는 'AT'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장 별지 1 원고들 명단, 별지 3 원고들 피해내역 및 금액 부분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AT'은 'T'의 오타임이 명백하다.

19. U

20. V

21. W

22. X

23. Y

24. Z

25. AA

$\frac{27}{11}$.

별지 2

원고들 피해 내역 및 금액

순번	성명	일자	금액(원)	합계(원)
1	C	2016-12-27	500,000,000	1,450,004,610
		2016-09-12	97,847,110	
		2016-09-28	101,400,000	
		2016-10-14	102,357,500	
		2017-02-06	220,000,000	
		2017-02-21	110,000,000	
		2017-03-02	250,000,000	
		2017-04-13	68,400,000	
2	D	2016-03-22	55,000,000	514,000,000
		2017-01-26	139,000,000	
		2017-02-07	310,000,000	
		2017-05-18	10,000,000	
3	E	2016-09-12	216,000,000	487,707,250
		2016-12-27	10,000,000	
		2016-09-23	30,000,000	
		2016-09-26	20,000,000	
		2016-10-14	30,707,250	
		2017-02-01	10,000,000	
		2017-02-17	30,000,000	
		2017-02-22	30,000,000	
		2017-04-28	30,000,000	
		2017-04-28	30,000,000	
		2017-05-16	51,000,000	
4	F	2017-03-14	100,863,010	303,986,290
		2017-05-31	100,000,000	
		2017-09-05	103,123,280	
5	G	2017-02-21	100,958,900	289,958,900
		2017-05-02	44,000,000	
		2017-05-30	30,000,000	
		2017-06-01	100,000,000	
		2017-04-25	15,000,000	
6	H	2016-09-12	10,871,900	237,071,900
		2017-01-17	110,000,000	

		2017-01-18	56,000,000	
		2017-03-31	40,200,000	
		2017-04-05	20,000,000	
7	I	2017-01-18	200,000,000	200,000,000
8	J	2017-01-17	50,000,000	200,000,000
		2017-05-17	100,000,000	
		2017-06-20	50,000,000	
9	K	2016-03-22	20,000,000	124,218,360
		2016-10-11	59,218,360	
		2017-03-02	20,000,000	
		2017-05-23	15,000,000	
		2017-06-21	10,000,000	
10	L	2017-02-01	30,000,000	102,000,000
		2017-05-18	11,000,000	
		2017-05-26	11,000,000	
		2017-06-12	40,000,000	
		2017-06-14	10,000,000	
11	M	2016-11-01	100,000,000	100,000,000
12	N	2016-11-02	100,000,000	100,000,000
13	O	2016-08-26	100,000,000	100,000,000
14	P	2016-09-23	100,000,000	100,000,000
15	Q	2017-04-13	100,000,000	100,000,000
16	R	2017-04-07	100,000,000	100,000,000
17	S	2017-01-04	93,100,000	93,100,000
18	T	2016-10-04	20,000,000	81,000,000
		2017-01-25	50,000,000	
		2017-06-20	11,000,000	
19	U	2016-03-22	20,000,000	80,000,000
		2016-08-01	60,000,000	
20	V	2017-06-30	50,000,000	50,000,000
21	W	2017-01-16	50,000,000	50,000,000
22	X	2016-10-12	40,000,000	40,000,000
23	Y	2016-03-22	30,000,000	30,000,000
24	Z	2017-04-24	30,000,000	30,000,000
25	AA	2016-11-07	15,000,000	15,000,000
합계				4,978,047,310

끝.

별지 3

피고 피해 내역 및 금액

계약당사자	계약체결일자	금액(원)
피고	2016. 8. 30.	125,000,000
	2017. 2. 6.	30,000,000
	2017. 2. 28.	20,000,000
	2017. 5. 18.	110,000,000
	2017. 6. 26.	50,000,000
	2017. 6. 26.	30,000,000
	2017. 7. 20.	30,000,000
AS(피고의 딸)	2016. 8. 31.	20,000,000
	2017. 1. 10.	8,000,000 ²⁾
	2017. 7. 10.	18,000,000
합계		441,000,000

끝.

2) 월 1,000,000원 씩 8회 이체